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분야 인권업무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기간을 조정(3개월 연장)하고, 적용기간 경과('22년 6월 30일)에 따라 별표2의3 및 별표2의4를 폐지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04”를 “205”로 하고, 일반직 계 “199”를 “20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47”을 “48”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205”를 “2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0”을 “201”로 하며, 행정사무관 “50”을 “51”로 한다.

별표2의3, 별표 2의4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 관련)

1.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2023년 9월 30일까지
2)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	1명 (4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 군인권보호국	1명 (고위공무원단)	2025년 6월 30일까지
4)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총괄과	4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2025년 6월 30일까지
5) 군인권보호국 군인권협력지원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구정원대비표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04</u>		<u>205</u>	+1	
	.		.		.		
	.		.		.		
일반직	계		<u>199</u>		<u>200</u>	+1	
	.		.		.		
	.		.		.		
행정사무관			<u>47</u>		<u>48</u>	+1	
	.		.		.		
	.		.		.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의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05</u>		<u>206</u>	+1	
	.		.		.		
	.		.		.		
일반직 계			<u>200</u>		<u>201</u>	+1	
	.		.		.		
	.		.		.		
행정사무관			<u>50</u>		<u>51</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5